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5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김윤덕·황정아·이연희

허 영・김교흥・윤준병

양문석 • 이춘석 • 문진석

이워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8조 개정('22.1.18.)에 따라,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"운영비"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.

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,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함.

주요내용

- 가.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'위탁 운영비'를 '운영비'로 개정함(안 제29조제1항).
- 나.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

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(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1항 중 "수탁사업자는"을 "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"으로, "위탁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"를 "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,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29조(수익금의 사용) ① 서울올 제29조(수익금의 사용) ① 수탁 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체육진 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--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총매출 액 중 제27조에 따른 환급금과 제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를 ----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정에 출연하고, 그 결과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 넘겨준다. 야 한다. <삭 제> ②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 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 업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,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